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이행기반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인력 47명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 환경교육팀 및 갈등조정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환경부 유역환경청 4명, 지방환경청 3명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1명 등 총 8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개방형직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개 직위(환경보건정책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새롭게 2개 직위(녹색전환정책관,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국장급 직위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1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감사관·환경보건정책관·국립환경과학원장·국립환경과학원”을 “감사관·녹색전환정책관·국립환경과학원장·국립환경과학원”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을”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국장급 직위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이 조에서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1개 직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기본운영규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0의4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전산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를 신설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전산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서기 4”를 삭제한다.

별표 18 제2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유역·지방환경청)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1 중 1. 제4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3. 제4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
월 31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73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
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
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
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직제 제5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u>감사관 · 환경보건정책관 · 국립환경과학원장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을 말한다.</u>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u>감사관 · 녹색전환정책관 · 국립환경과학원장 · 국립환경과학원 -</u> ----- <u>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국장급 직위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이 조에서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1개 직위를 ---.</u>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화담당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연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과장 중 <u>「책임운영기관의</u>	② ----- ----- ----- ----- ----- ----- ----- ----- ----- ----- ----- <u>기본운영규정</u> -----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 -----.
제43조(한시정원) ①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이행기반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② (생략) ③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환경청에 둔다.	제43조(한시정원) ① ----- ----- ----- ----- ----- 2022년 12월 31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2022년 12월 31일----- ----- -----.
환경부령 제73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73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로 증원되는 별표 12의 정원 4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 별표 14의 정원 3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 및 별표 16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74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설된 기구(정책홍보팀, 시민소통팀 및 환경교육팀) 중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민소통팀을 제외한 정책홍보팀 및 환경교육팀은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illegible]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2022년 12월 31일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갈등조정팀은 <u>2020년 12월 31일</u>까지 존속한다. ③ (생략)	② ----- ----- ----- ---- <u>2022년 12월 31일</u>----- -----.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0의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보건서기</u> <u>· 전산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u>	• • <신 설>	• • 4	+4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보건서기</u> <u>· 전산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서기</u>	4	<삭 제>	-4
• •	• •	• •	

[별표 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9조제1항 관련)

1. 환경부

평가대상 조직

조 직	정 원	평가기간
1) 생활환경정책실	1명 (고위공무원단)	2022년 1월 31일까지
2) 자연환경정책실 통합허가 제도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1명)	2021년 2월 28일까지

2. 환경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 무	정 원	평가기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유역· 지방환경청)	47명 (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3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1. 제4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 •	• <u>1. 제43조 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u> • • <u>3. 제43조 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u> • •	• <u>1. 제43조 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u> • • <u>3. 제43조 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u> • •	